

- 노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노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 wk 한다.

노혈관질환②

고혈압증 악화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1780판결
- 대법관 이희창, 배만준, 김석수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12. 27. 선고, 90구1809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 참조판례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727 판결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이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 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 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원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서 소외 회사의 부산 1바 6886호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전해 오던 원고들이 1989. 11. 심한 두통, 현훈, 전

신피로 등의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같은 달 25일에 각 'LPG중독증(추정)' 등의 진단을 받고 위와 같은 두통, 현훈 등은 운전 중 LP가스의 장시간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9. 12. 27. 원고들의 위 증세는 LP가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에서 비롯된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각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강균대는 1984. 11.에, 원고 박정문은 1988. 2. 10.에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운전을 해 오다가 1988. 3.경부터는 2인 1조가 되어 위 택시를 매일 04:00와 16:00를 교대시간으로 정하여 1일 12시간씩 매월 27일 정도를 식사시간 1시간을 빼고 그 것도 주·야간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운전을 계속하여 1989. 11. 경에는 원고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원고들은 1989. 8.경부터 기화기 등을 통해서 누출된 LP가스 및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차내로 스며들어 차안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소외 회사에 알려 차내로 가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정비를 하였으나 위 택시(1990. 2. 6. 폐차됨)는 86년식 포니로 그 당시 차량이 3년이 넘은 노후차량이어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스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도 원고들은 얼마나 않은 폐차시까지 참고 견딜 요량으로 냄새가 심할 때는 창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운전을 계속해 오다가 결국 원고 박정문은 같은 해 11. 16에 원고 강균대는 같은 해 11. 23에 차를 운행 하던 중 심한 현기증과 두통, 전신무력감 등의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기 위해 이른 사실, 그런데 위 택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LP가스는 프로판, 부

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그 것의 흡입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으나 과로한 상태에서 LP가스를 장시간 흡입하거나 또는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LP가스를 장시간 흡입하면 그것이 고혈압증을 악화시키는 등 하여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 한편 원고 강균대는 1985~1989 직장 신체검사시에 혈압이 210/150~170/115mmHg로 원래 고혈압증이 있었고, 원고 박정문은 1988, 1989 직장 신체검사에 혈압이 140/90mmHg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이 건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원고 강균대는 5년 간, 원고 박정문은 2년 가까이 결근도 하지 않고 평소에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가스의 흡입과 공동 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 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범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뇌혈관질환③

뇌간마비 사망

· 대법원 제1부, 1995. 3. 14. 판결 94누7935 파기환송
· 대법관 정귀호,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9. 93구12000판결

· 참조조문 : 가, 나, 다,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3조 1항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2. 4. 14 91누10015판결
1993. 10. 12 93누9408판결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원심은 1985. 6. 24 부터 소외 대도통상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의 남편인 망 이기윤이 1992년 5월

말 벌점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1부터 쉬다가 같은 달 9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그 다음 날 11:3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인한 것임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그 면허정지기간을 단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초래할 만한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은 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서울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게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항), 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법 제113조), 만일 위 망인이 벌점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 본인의 고의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면 법규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된 점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정지처분에 수반하여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당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참조), 그 인과 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일 2교대 근무로 오전 근무자는 07:00부터 16:00까지, 오후 근무자는 17: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각 근무하되 일주일마다 근무 형태를 바꾸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1일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행하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 형태 및 과중한 근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는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압상승에 의한 뇌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혈압상승이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원인이 되는데, 과로가 혈압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어 과로도 뇌지주막하출혈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달리 위 망인이 종전부터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을 앓았다거나 위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쉬는 동안에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변론에 전혀 현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계속된 무리한 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위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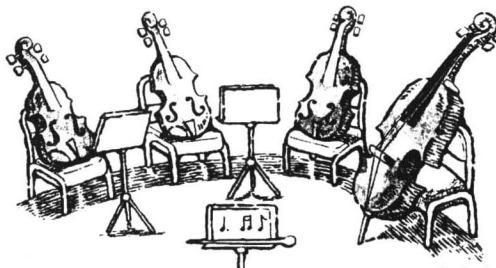
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또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 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밥알이 사발에 담겨져 있으면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한알한알 밥상에 둉굴고 있으면 티가 됩니다.

책장에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아름답게 보이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 있어야 제격입니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밥알은 사발에, 신은 신발장에, 연필은 연필통 속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은 책상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바른 위치를 지킬 때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종이 한 장, 사무집기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아줍시다.

정위치 운동을 실천합시다.